

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18-67호

응암제10구역 주택재개발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 고시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7-308호(2007.09.06)로 정비구역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09-60호(2009.10.01)로 사업시행인가, 서울특별시 은평구고시 제2014-70호(2014.10.10)로 사업시행변경인가, 서울특별시 은평구고시 제2015-76호(2015.09.17)로 관리처분계획인가, 서울특별시 은평구고시 제2015-105호(2015.12.24)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, 서울특별시 은평구고시 제2016-63호(2016.07.21), 제2017-107(2017.11.16)호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419번지 일대 응암 제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7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 인가하고, 같은 법 제78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18년 6월 28일

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

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가. 종 류 : 주택재개발정비사업
- 나. 명 칭 : 응암제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

2.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

- 가. 위 치 :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419번지 일대
- 나. 면 적 : 61,052.60㎡
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- 가. 성 명 : 응암제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(조합장 : 김윤태)
- 나. 주 소 :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로 239, 2층

4.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일 : 2018년 6월 28일

5.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의 요지

가.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

1) 건축계획

용도		대지면적(㎡)	동수	층수	세대수	건축 연면적(㎡)	비고
주택	소계	46,735.6842	11	-	1,305	172,294.2673	
	분양	41,577.3155	10	지하3/지상25	1,079	153,562.9216	
	임대	5,158.3687	1	지하3/지상21	226	18,731.3457	
상가		497.9158	-	지하1/지상3	-	1,280.4300	

2) 토지이용계획

택 지				공공시설			그 밖의 용도			
소 계	공동주택	단독주택	기타	소 계	도 로	공원	소 계	종교시설	유치원	주차장
47,233.60	46,735.6842	-	497.9158	12,341.60	8,196.80	4,144.80	1,477.4	1,104.4	282	91

나. 권리자별 관리처분

권리자별	분 양				청 산	토지로 보상
	소계	공동주택	상가	주택 및 상가		
계	597	593	1	3	167	3

다.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

구 분	용도폐지		신 설		비 고
종 류	도 로	공 원	도 로	공 원	
규모(㎡)	6,423.30	174.90	8,196.80	4,144.80	

라.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

구 분		규모별 (㎡)	건 립 세대수 (호)	관리처분대상자별 내역				비고
				조합원	보류시설	일반분양	임대	
임 대	36㎡형	36.0820	80				80	
	40㎡형	40.6525	104				104	
	51㎡형	51.2483	42				42	
분양	공동 주택	59-1㎡형	218	186	2	30		
		59-2㎡형	228	185	2	41		
		59-3㎡형	86	66	1	19		
		84㎡형	499	152	2	345		
		100㎡형	48	17	1	30		
	상 가	총 연면적 1,280.43㎡	12	4		8		

※ 상가는 조합원 호수 배정후 배분

마. 기존건축물 철거예정 시기 : 현재 철거완료(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에 따름)

6. 관계서류 : 생략(서울특별시 은평구청 주거재생과 비치서류와 같음). 끝.